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4 5 6 매우 매우 다소 보통 낮은 낮은 높은 높은 위험 위험 위험 위험 위험 위험

HDC 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이 의헌 등급은 으용실적 시작상화 등에 따라

<u>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상황 등에 따라</u>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HDC좋은지배구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HDC좋은지배구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집 합 투 자 기 구 명 칭 : HDC좋은지배구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HDC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 · 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4. 작 성 기 준 일 : 2025년 4월 23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5년 5월 15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10조좌까지 모집

[모집(매출) 총액 : 10조원]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모집 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공시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dart.fss.or.kr

.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www.hdcasset.com), 각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1. 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의미하지 않으며, 기대수익률은 확률에 의한 것으로 사전에 정해진 모든 조건이 우호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만 실현되는 수익률입니다.
-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8.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클래스 가입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2. ESG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대상자산의 ESG 평가결과의 개선, 투자전략의 이행 등이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로 반드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 차>

[요약정보]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3. 모집예정금액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5. 인수에 관한 사항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 4. 집합투자업자
- 5.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11. 매입, 환매, 전환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 용어의 정리



[요약정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5.04.23

HDC 좋은지배구조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 [펀드코드: 67264]

투자위험등급 : 2등급[높은 위험]

3 4 6 매우 다소 매우 높은 낮은 보통 높은 낮은 높은 위험 위험 위험 위험 위험 위험

HDC 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따른 주식가격하락위험, 원본손실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HDC좋은지배구조증권투자신탁1호(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일반 주식형(성장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주로 핵심우량주 (업종대표주)에 투자하며, 이에 일정 부분 '좋은지배구조군'을 감안한 투자전략을 적용하여 수익을 추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단위: 연, %)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 천원)				
클래스 종류		, · · · · · · · · · · · · · · · · · · ·	판매 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총 보수· 비용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 이내	1.800	0.90	1.350	1.8028	282	469	662	1,066	2,19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없음	1.900	1.00	1.590	1.9025	195	396	603	1,036	2,241	
수수료선취- 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 이내	1.250	0.35	0.990	1.2524	177	309	446	735	1,557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없음	1.800	0.90	1.160	1.8024	185	375	572	984	2,133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C-P)	없음	1.600	0.70	-	1.60	164	334	509	877	1,912	

투자비용

- 주1)'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 주2)종류 A(선취판매수수료 포함)와 종류 C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 보수 · 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6년 10개월 이 경과된 시점(종류 A-E(선취판매수수료 포함)와 종류 C-E에 각각 투자할 경우에는 종류 C-E가 지속적으로 높음)이나, 판매회사별로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 또는 종류별 성과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3)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4)'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 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최초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종류	_	2024/04/05 ~	2023/04/05 ~	2022/04/05 ~	2020/04/05 ~	이후(%)
		2025/04/04	2025/04/04	2025/04/04	2025/04/04	,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2009-04-17	-10.30	0.01	-3.69	9.15	5.28
비교지수	2009-04-17	-9.37	-0.04	-3.25	7.22	3.90
수익률 변동성(%)	2009-04-17	17.66	16.07	16.14	16.91	15.99

주 1)비교지수 : KOSPI*95% + CD91*5%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 2)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펀드 총비용 지급 후 해당 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	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 주식형)				운용
성명	생년	직위	집합 투자기구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경력년수 (ESG 운용)
			구시기구 수(개)	(억원)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E3G E-6)
유동옥	1983	책임운용 (수석매니저)	15	3,465	-	-	-0.37	3.21	10 년 6 개월 (4 년 4 개월)
장승성	1990	부책임운용 (과장)	12	3,297	-0.37	3.21	-0.37	3.21	5 년 4 개월 (1 년 2 개월)

운용전문 인력

-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상기 운용전문인력 모두 해당사항 없음
- 주1)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팀운용 방식으로 운용되며 책임운용전문인력 부재 등 상황에 따라 해당 팀 내다른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주2)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3)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주5)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 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 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의미하지 않으며, 기대수익률은 확률에 의한 것으로 사전에 정해진 모든 조건이 우호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만 실현되는 수익률입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주식 및 채권 관련장내파생상품 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정책 변화, 세제의 변경 등이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주식 고편입 상품으로 주식 가격 하락(전체 주식시장의 변동 또는 개별기업의 실적 변화 등으로 인한 개별기업의 주가변동)에 의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하락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투자합니다. 이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은 주식의 가격하락위험에 노출되며, 주식가격은 투자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매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수행할 수 있으며, 통상이러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비용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동 전략은 일반적으로 시장 수익률과 괴리가 클 수 있으므로, 기대수준이 시장수익률 수준인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액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등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투자: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조하여					
매입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기준가 적용 매입 환매 15시 30분 이전 4영업일 관련 세금 등 공제 후 대금 지급					
방법	15시30분 경과후	3영업일 기준가 적용 매입 방법 15시30분경 과후 대금 지급 3영업일 기준가 적용, 4영업일 관련 세금 등 공제 후 대금 지급					
환매수수료	없음						
기준가	│산성방법│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전일 집합투자기구 총 좌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공시상소 │	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hdc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 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u>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u> 입니다.					
과세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101	퇴직연금제도 의 세제 여근저추계진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 계좌에					
	가입자에 대한 과세	사 자금 인출시 관련세법에 따라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에 대한	가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HDC자산	운용㈜ (대표	번호: 02-3215-30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hdcasset.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mark>모집. 매출 총액</mark> 10조좌							
효력발생일	2025년 5월 15일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	걸자(www.hc	lc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3부 1. 재무정보 및 제4부 1.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					
		=목정에 따다 (Class)	라 3 단계로 구분 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수수료 선취(A)	집합두자기구의 특성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 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6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6년 10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수수료	수수료 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 수수로 미징구형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 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6 년 10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6 년 10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판매 ^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 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의 종류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 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 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 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 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 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무권유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					
		저비용(G) 퇴직연금	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					
		(P)	한투자기구입니다.					
	기타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					
		(P2) 기관(F)	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I)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급(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 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hdc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dcasset.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dcasset.com)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HDC좋은지배구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67264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67265
수수료선취-온라인(A-E)	BL07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92616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A173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BG62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2)	BT24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고액(C-F)	A174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BQ83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BQ838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BZ78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2)	BQ988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C-P2e)	BZ785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AP621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BP11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BP245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ㆍ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X]

주)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 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 지를 통하여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ㆍ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dcasset.com)

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모집(매입)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부의 내용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HDC좋은지배구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67264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67265
수수료선취-온라인(A-E)	BL07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92616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A173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BG62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2)	BT24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고액(C-F)	A174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BQ83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BQ838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BZ78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2)	BQ988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C-P2e)	BZ785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AP621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BP11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BP245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시행일	주요 내용
2007.04.05	- 최초 설정
2007.08.06	- 투자대상 중 주식의 정의 변경[법률이 규정한 성질을 구비한 유가증권 포함]
2008.05.02	- 투자대상 '주식선물' 추가
2008.10.24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약관 변경(국내주식 60% 이상 투자)
2009.05.0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아이좋은지배구조주식투 자신탁1호 → 아이좋은지배구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2010.05.03	-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개정(2009.7.21)사항 반영 : 이익분배조항 변경 - 판매보수 정률식인하 적용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2조 및 제270조 개정(2009.12.21)사항 반영 : 운용보고서 등 발송 방법 변경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개정(2010.01.01)사항 반영 : 증권거래세의 면제
2011.03.22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홍호덕 → 박정훈)
2011.04.18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박정훈 → 홍현기) - 종류 수익증권 추가(C-E, C-I, C-F)
2012.01.02	- 집합투자업자 사명 변경에 따른 펀드명칭 변경(아이좋은지배구조증권투자신탁1호(주



	식) → HDC좋은지배구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2013.01.16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홍현기 → 홍호덕)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0조 및 제91조, 제92조, 제216조, 제270조 개정(2012.06.29) 사 항 반영 : 자산운용보고서 발송 변경 등
2014.02.03	-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HSBC펀드서비스 → 외환펀드서비스) - 자본시장법 제188조 및 제190조, 제191조, 제193조, 제246조 등 개정(2013.5.28) 사항 반영 : 수익자총회 의결방식 변경 등
2014.02.28	- 종류 수익증권 추가(S)
2016.03.15	- 환매수수료 삭제
2016.07.02	-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 내용 반영(투자위험 등급 6단계 체계로 변경)
2016.07.30	- 증권시장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판매 및 환매 기준시간 변경
2017.01.05	- 종류 수익증권 추가(A-E)
2017.04.29	- A-G, C-G 신설(클린클래스 신설)
2017.05.25	- 종류 수익증권 추가(C-W, C-P, C-P2)
2017.07.14	- 종류 수익증권 추가(C-I2)
2017.11.23	- 종류 수익증권 추가(C-Pe, C-P2e)
2019.09.25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2019.08.01) 반영
2021.02.01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홍호덕 → 박정훈)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박정훈 → 강병희)
2021.07.02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박정훈 → 정동욱)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강병희 → 박정훈)
2022.03.03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박정훈 → 홍찬양)
2022.04.15	- 고유재산 투자 관련 사항 반영
2022.05.24	-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의한 정기 갱신
2022.07.08	- 운용전문인력 변경(책임운용역 : 정동욱→홍찬양 / 부책임운용역 : 홍찬양→장승성)
2023.03.24	- 운용전문인력 변경(책임운용역 : 홍찬양→장승성 / 부책임운용역 : 장승성→정동욱) -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투자금 일부 회수)
2023.05.23	-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의한 정기 갱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사항 반영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연금세제)
2024.02.14	- ESG 관련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사항 반영
2024.05.17	-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의한 정기 갱신 -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사항 반영(표준편차 → 최대손실예상액)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사항 반영(환매 가능 여부 및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연금세제)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 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2024.07.24	- 운용전문인력 변경(책임운용역 : 장승성→유동옥 / 부책임운용역 : 정동욱→장승성) -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투자금 일부 회수)
2024.08.30	- S 클래스 설명 변경(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반영) - S 클래스 판매보수 인하(0.35% → 0.33%) - 종류 C-Pe 및 C-P2e 가입자격 오기 수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2025.05.15	-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의한 정기 갱신
	- 세법 개정사항 반영(외국납부세액)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 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해산)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HDC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1 대영빌딩 2층 (우:07333) (대표전화 : 02-3215-3000)

주)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2025.04.23 기준)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 주식형)					
성명			집합	운용	운용'	역(%)	운용,	나(%)	운용경력년수 및 이력	
					투자기구 수 (개)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유동옥	1983	책임 운용 (수석 매니저)	15	3,465	-	-	-0.37	3.21	* 운용경력: 10년 6개월 (ESG 펀드 운용: 4년 4개월) - 경원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09.12~'12.09 원베스트투자자문 주식운용본부 - '13.01~'14.11 헥서스투자자문 주식운용본부 - '14.12~'24.06 우리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 '24.07~(현재) HDC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장승성	1990	부책임 운용 (과장)	12	3,297	-0.37	3.21	-0.37	3.21	* 운용경력: 5년 4개월 (ESG 펀드 운용: 1년 2개월)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16.07~'19.12 DB 손해보험 주식운용 - '19.12~'21.10 베어링자산운용 주식운용팀 - '21.10~(현재) HDC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상기 운용전문인력 모두 해당사항 없음

주2)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1)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팀운용 방식으로 운용되며 책임운용전문인력 부재 등 상황에 따라 해당 팀 내다른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구분	성명	운 용 기 간
	홍호덕	최초 설정 ~ 2011.03.21
	박정훈	2011.03.22 ~ 2011.04.17
	홍현기	2011.04.18 ~ 2013.01.15
	홍호덕	2013.01.16 ~ 2021.01.31
책임운용전문인력	박정훈	2021.02.01 ~ 2021.07.01
	정동욱	2021.07.02 ~ 2022.07.07
	홍찬양	2022.07.08 ~ 2023.03.23
	장승성	2023.03.24~ 2024.07.23
	유동옥	2024.07.24~ 현재
	박정훈	2011.04.18 ~ 2021.01.31
	강병희	2021.02.01 ~ 2021.07.01
H +II O O O D O O D	박정훈	2021.07.02 ~ 2022.03.0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홍찬양	2022.03.03 ~ 2022.07.07
	장승성	2022.07.08 ~ 2023.03.23
	정동욱	2023.03.24~ 2024.07.23
	장승성	2024.07.24~ 현재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그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6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6년 10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수수료	수수료 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 수수료 미징구형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 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 (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6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6년 10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판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경로	온라인 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타	개인연금 (P2)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F)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I)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주)종류(Class)별 구체적인 가입자격, 보수 및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나. 종류별 가입자격" 및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일반 주식형(성장형) 집합투자 기구 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주로 핵심우량주(업종대표주)에 투자하며, 이에 일정 부분 '좋은지배구조 군'을 감안한 투자전략을 적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 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1)}	투자대상 내역
1	지분증권	60% 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출자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 수권이 표시된 것(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과 법 제4



			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 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단,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		
2	채무증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 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5)	주식 및 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6	금리스왑거래		내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 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		
7	집합투자증권	5%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다만, 법 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8	환매조건부 매도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9	증권의 대여주3)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10	증권의 차입 ^{주4)}	20%이하	① 내지 ④에 의한 증권의 차입		
11)	신탁업자 고유 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데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2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주1)투자비율은 투자신탁재산 자산총액에 대비하여 산출

주2)ESG 관련 투자대상 : 이 투자신탁은 주식 투자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Governance(지배구조) 요소를 감안한 투자전략을 일부 적용할 예정입니다.

주3)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 대여 가능

주4)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혜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 목적 위해 증권 차입 가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①~④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 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위의①~④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 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 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 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 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동일종목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 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 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산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 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거래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 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 지분증권에의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을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이 시가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다.
투자한도 초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 5호 내지 제9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동일종목 투자제한" 및 "파생상품 거래"의 규정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신용등급 하락시 집합투자업자의 조치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 재산으로 투자한 채권 및 어음의 신용등급이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

▶ 편입비전략

- 전체 주식 편입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약관상 편입비율(60%~100%) 범위 내에서 지분증권에의 투자비율을 조정



-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로서 집중적인 주식운용
- 시장 변동성 확대 상황하에서 일부 주식 편입비의 탄력적 대응

▶ 포트폴리오 전략

- 국내외 주요 경기변수 등을 고려하여 Top-Down(하향식) 분석에 의한 유망 종목 선정 및 핵심우량주(업종대표주) 중심으로 구성
- Bottom Up(상향식) 분석에 의한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재조정

▶ 자산배분 전략

- 종목간 페어-트레이딩(공정가치를 활용한 매매)을 통한 안정적인 초과수익 달성

※ ESG 관련 투자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주로 핵심우량주(업종대표주)에 투자하며, 이에 일정 부분 '좋은지배구조군'을 감안한 투자전략을 적용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1) 투자대상자산의 선정과 관련하여 고려하는 ESG 요소 : 일부 Governance(지배구조)
- **2) 평가 방법 및 프로세스** : 자체평가
- 별도의 ESG 관련 리서치 전담 조직은 없으나, 주식운용 내 리서치의 정량적 및 정성적 분석을 통해 거버넌스 점수를 평가
 - ① 투자 프로세스:
 - 투자유니버스(Investment Universe)에서 Governance(지배구조) 점수를 0~35점으로 평가
 - 20점 이상 종목을 '좋은지배구조군' 주식으로 자체 정의
 - 모델 포트폴리오(MP)에서 '좋은지배구조군' 종목이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
 - 담당 운용역은 해당 모델 포트폴리오(MP) 내에서 펀드 포트폴리오(AP) 구성
 - 펀드 포트폴리오(AP) 구성 시,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투자의사결정. 다만, 별도로 재무적 요소와 ESG 요소 간 고려 비중을 설정하고 있지 않음



- ② Governance(지배구조) 점수 평가 시 고려 항목
 - 지배주주 지분율, 사외이사 비율, 지주사 체제 구축, 순환출자 구조, 배당성향 등
 - 추가적으로 지배구조 개선 가능성 등 운용역의 정성적 평가 가미
- ③ 주주활동 여부 : 이 투자신탁은 주주활동을 투자전략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 ※ 상기 Governance(지배구조) 평가 방법 및 투자 프로세스는 시장 상황 및 운용 여건 등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2) 비교지수: KOSPI 지수 * 95% + CD금리 * 5%
- 주1)비교지수 선정사유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집합투지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자산, 투자 비중 및 투자전략을 고려하여 시장수익률과 공정한 성과 비교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비교 지수를 지정하였습니다.

주2)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고, 변경시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 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KOSPI(한국종합주가지수):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하는 한국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종합 주가 지수로서, 유가증권 시장 상장 종목을 대상으로 한 시가총액식 지수
-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금융투자협회가 제공하는 금리로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선정한 증권회사(10개사)로부터 제공 받은 CD(91일) 최종거래수익률 또는 최종호가수익률을 중 8개 값을 평균하여 산출하는 금리

(3) 위험관리

- 시장리스크 발생 시 대내외 환경 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장에 대응합니다.
-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을 활용

(4) 적극적인 매매전략의 구사여부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여 수익을 추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매매전략은 그렇지 아니한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비용(매매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1)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2)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 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 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지분증권(주식 등)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지주회사, 준 지주회사 및 그 핵심관계 계열사뿐만 아니라 M&A관련주 등 우량주군에 투자하여 벤치마 크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투자한 지분증권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반대로 가치가 하락할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다음 투자 위험은 작성일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켜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 채무증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 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집합투자



	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을 국내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국내 주식시장 가격변동에 따른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금리) 변동 위험	일반적으로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 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관련 거래상대방 또는 보유하는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채무불이행 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합니다. 투자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부도발생에 따라 급격이 가격이 변동되거나, 어음 등의 투자에서 발행사의 파산 등의 원인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 매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수행할 수 있으며, 통상이러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비용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동전략은 일반적으로 시장 수익률과 괴리가 클 수 있으므로, 기대수준이 시장수익률수준인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투자전략 수행 위험	이 투자신탁은 전통적인 기업 분석 외에 지배구조(governance) 이슈 등의 비재무적 이슈를 동시에 고려하여 투자대상 종목 선별 등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시장상황 등에 따라 이러한 투자전략을 활용한 전략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SG 평가결과 적용 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 자체 리서치 조직을 통하여 정보의 객관성·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정보의 완벽한 정확성,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므로 다른 외부평가기관 및 금융회사와 정보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운용기간 중 투자대상 기업에 업무상 재해 발생, 경영진의 일탈행위 등 급작스런 부정적인 이슈 발생으로 인해 평가결과가 변동 또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 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나. 환매'의 '(7)수익증권의 환매연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소프트 달러 수수료 (Soft-Dollar Commission)	집합투자업자는 소프트 달러 수수료(soft-dollar commission)를 발생시키는 거래가 고객에게 직접적이고 구별되는 이익이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시장의 관행을 엄중하게 준수하면서, 회사와 고객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소프트 달러 수수료 정책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으로 회사가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회사의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분석(Research)과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에 한정되며 출장, 숙박, 엔터테인먼트, 일반 사무용품 및 서비스, 사무실 및 기자재, 회원권, 임직원보수 또는 직접 지불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프트 달러 수수료(soft-dollar commission): 집합투자기구가 증권회사 등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 지급하는 것. 즉, 집합투자업자가증권회사 등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직접 현금으로 지불하는 대신 위탁매매거래 수수료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
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액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등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증권 대차 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u>'실제 수익률 변동성'</u>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 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1등급)에서 매우 낮은 위험(6등급)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 중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이하 'VaR')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은 <u>37.75%</u>으로, <u>2등급(높은위험)</u>에 해당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국내 경제여건 변화, 국내 주식시장 및 개별 기업의 재무·영업 환경 등이 주식의 가치변동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국내 주식 등과 관련된 투자위험으로 인한 투자원본손실위험이 높음을 충분히 인지하여 감내할 수 있는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 이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투자위험등급은 매 결산시마다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재산정할 예 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험등급 변경 내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2016.07.02	1등급	2등급	▶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를 5단계에서 6단계로 개편▶ 최근 결산일 기준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위험등급 변경		

[HDC 자산운용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97.5% VaR 모형 사용)]

등급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6 등급
	(매 우높은위 험)	(높은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 은 위험)
97.5% VaR ^{주 1)}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주 1) 과거 3 년 일간 수익률에서 2.5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 $(\sqrt{250}\,)$ 를 곱해 산출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합니다.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자격 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 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가입자격 제한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액(C-I)	최초 납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액(C-I2)	최초 납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기관, 고액(C-F)	-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최초 납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개인 -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법인 - 집합투자기구, 보험업법상의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 판매회사의 특정금전신탁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C-W)	Wrap Account용(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조 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제3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

[※] 상기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시장위험 기준에 의한 것이며, 환율위험,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및 파생상품 위험(고난도 펀드, 레버리지, 인버스 등) 등 실제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상향하는 등 최종 위험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C-P)	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C-P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을 이용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 좌를 개설한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C-P2)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C-P2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을 이용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 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 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 를 징구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A-G)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창구에서 투자설명 없이 직접 선택· 가입하고자 하는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 하는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에 가입 하고자 하는 자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 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1) <u>오후 3시 30분 이전</u>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u>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D+1)</u>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2) <u>오후 3시 30분 경과 후</u>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u>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3)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 <u>오후 3시 30분 이전</u>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u>2영업일(D+1)</u>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u>4영업일(D+3)</u>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2) <u>오후 3시 30분 경과 후</u>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u>3영업일(D+2)</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5 시 30분 [오후 3시 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 30분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하며,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에 의해 기준시점이 결정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나.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다.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 가 있는 경우
 - 나.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 가 있는 경우
 - 다.대량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그밖에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9) 환매 가능 여부 및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구분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	-	0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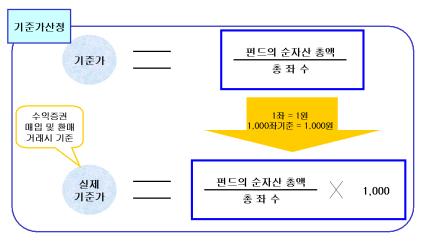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u>재무상태</u> 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종류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유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hdcasset.com) • 판매회사 • 협회 (http://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주)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은 관계법령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합니다.
- 주요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산	평 가 방 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u>최종시가(해외 시장에</u> 서 거래되는 상장주 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 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장내파생상품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u>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u> <u>또함한다)</u> 에서 공표하는 <u>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u> . 다만, 평가일 의 공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공표가격에 의하여 평가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및 계산회사가 제 시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3	상장채무증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 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ᆈ사자케ㅁᄌ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4	비상장채무증권	③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5)	기업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6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u>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u> 로 평가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구분	주요내용
구성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
│ 업부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함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형 명칭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 이내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 이내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F! 11 #1 01 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2)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고액(C-F)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C-P2e)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납입금액의 0.6% 이내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미징구-무권유저비용(C-G)	해당사항 없음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주1)신탁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를 청구



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주2)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고,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 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3)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후취판매수수료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수익증권저축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지급비율 (연간, %)									
종류	집합 투자 업자 보수	판매 회사 보수	신탁 업자 보수	일반 사무 관리 회사 보수	총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 비용	동종 유형 총보수	합성 총보수 • 비용	증권 거래 비용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0.848	0.90	0.03	0.022	1.80	0.0028	1.8028	1.350	1.8028	0.3279
수수료선취- 온라인(A-E)	0.848	0.35	0.03	0.022	1.25	0.0024	1.2524	0.990	1.2524	0.3275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0.848	1.00	0.03	0.022	1.90	0.0025	1.9025	1.590	1.9025	0.3273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0.848	0.90	0.03	0.022	1.80	0.0024	1.8024	1.160	1.8024	0.327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고액(C-I)	0.848	0.10	0.03	0.022	1.00	0.00	1.00	0.00	1.00	0.00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고액(C-l2)	0.848	0.02	0.03	0.022	0.92	0.00	0.92	0.00	0.92	0.00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 고액(C-F)	0.848	0.05	0.03	0.022	0.95	0.0027	0.9527	0.00	0.9527	0.329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랩(C-W)	0.848	0.00	0.03	0.022	0.90	0.00	0.90	0.00	0.90	0.00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C-P)	0.848	0.70	0.03	0.022	1.60	0.00	1.60	0.00	1.60	0.00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C-Pe)	0.848	0.35	0.03	0.022	1.25	0.0016	1.2516	0.00	1.2516	0.3287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C-P2)	0.848	0.60	0.03	0.022	1.50	0.00	1.50	0.00	1.50	0.3264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C-P2e)	0.848	0.30	0.03	0.022	1.20	0.00	1.20	0.00	1.20	0.3271
<u>수수료후취-</u> 온라인슈퍼(S)	0.848	0.33	0.03	0.022	1.23	0.00	1.23	0.00	1.23	0.3348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A-G)	0.848	0.60	0.03	0.022	1.50	0.00	1.50	0.00	1.50	0.00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0.848	0.95	0.03	0.022	1.85	0.00	1.85	0.00	1.85	0.00



무권유저비용(C-G									
지급시기	최초설정일	로부터 매	1개월 후	급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 * 직전 회계연도 : 2024.04.05 ~ 2025.04.04
- 주1)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2)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 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3)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4)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이 다른 집합투자기구(모투자신탁 포함)에 투자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5)이 투자신탁의 설정되지 않은 종류(Class)의 경우 기타비용, 증권거래비용 등은 기재되지 않았으며 총보수·비용 비율 및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에 합산하지 아니한 수치입니다.
- 주6)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동종유형 : 국내 주식형, 2025.03.31 기준)
- ※ 관련 비용의 종류 및 내역
 - ① 기타비용 종류: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감사보수, 기타위탁보수(보관대리인보수, 지급대리인보수), 기타비용(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 ② 증권거래비용 종류 :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및 거래비용, 대차거래비용(대 차관련수수료), repo거래비용(repo 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 ③ 금융비용 종류 :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이 있으며,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증권거래비용(원)	금융비용(원)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54,377,836	0

주7)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체 ESG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별도의 평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종류	구분	투자기간					
⊽π	下 世	1년 후	2년 후	3년 후	5년 후 1,066 1,066 735 735 1,036 1,036 984 984	10년 후	
수수료선취-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82	469	662	1,066	2,192	
오프라인(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82	469	662	1,066	2,192	
수수료선취-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77	309	446	735	1,557	
온라인(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	309	446	735	1,557	
수수료미징구-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95	396	603	1,036	2,241	
오프라인(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95	396	603	1,036	2,241	
수수료미징구-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85	375	572	984	2,133	
온라인(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85	375	572	984	2,133	



수수료미징구-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3	209	320	555	1,229
오프라인-고액(C-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03	209	320	555	1,229
수수료미징구-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4	192	295	511	1,135
오프라인-고액(C-I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94	192	295	511	1,135
수수료미징구-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8	199	305	529	1,174
오프라인-기관, 고액(C-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98	199	305	529	1,174
수수료미징구-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2	188	288	500	1,112
오프라인-랩(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92	188	288	500	1,112
수수료미징구-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4	334	509	877	1,912
오프라인- 퇴직연금(C-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64	334	509	877	1,912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8	261	399	691	1,520
퇴직연금(C-P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28	261	399	691	1,520
수수료미징구-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4	313	477	824	1,801
오프라인- 개인연금(C-P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54	313	477	824	1,801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3	251	383	663	1,461
개인연금(C-P2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23	251	383	663	1,461
수수료후취-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2	273	393	679	1,495
온라인슈퍼(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42	273	393	679	1,495
수수료선취-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12 370 532 8 ·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12 370 532 8	875	1,840		
무권유저비용(A-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532	875	1,840	
수수료미징구-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90	385	587	1,009	2,184
무권유저비용(C-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90	385	587	1,009	2,184

주1)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판매회사가 정하는 실제 판매수수료율 수준, 기타 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주 2)종류 A(선취판매수수료 포함)와 종류 C 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 보수 · 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6년 10개월 이 경과된 시점(종류 A-E(선취판매수수료 포함)와 종류 C-E 에 각각 투자할 경우에는 종류 C-E 가 <u>지속적으로</u> 높음)이나, 판매회사별로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 또는 종류별 성과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종류 S의 경우 1년 및 2년 후는 그 시점에 환매 청구한 것을 가정하여 후취판매수수료 0.15%를 반영하였고, 3 년후부터는 3년이 지난 시점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가. 이익 배분

(1)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 증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익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 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2021년 5월 25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 또한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이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일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신탁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시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 등)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 지급 시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 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 자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 **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 징 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 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 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 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세액공제	근로자의 퇴직연금 추가부담금은 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합산하여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포함, 이하 같음) -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					
과세체계 다양성 퇴직연금 수령방법(연금인출, 연금외인출 등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 결정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https://www.fss.or.kr)의 "연금세제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 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 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	-------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1) 납입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600만원 이내.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 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2020.1.1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2)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 세액공제(지방소득세포함).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납입금액의 16.5% 세액공제(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부터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종합소득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선택 가능[2024년 1월 1 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조사파메취 나는 게거버려 드에나 저희는 비계센터의 이번점 스이지의 친구가 이는 때에는 연구권초 나이즈며나(이					

주1)판매회사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세제혜택을 위하여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연금저축 납입증명서(이하 "납입증명서"라 합니다)를 발급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가입자격위반 또는 투자한도초과 등 법령이 정하는 가입요건의 흠결이 확인된 경우에 판매회사는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18기(2024.04.05 ~ 2025.04.04)	회계감사면제	-
제17기(2023.04.05 ~ 2024.04.04)	회계감사면제	-
제16기(2022.04.05 ~ 2023.04.04)	회계감사면제	-

가. 요약 재무정보 [단위 : 원]

	요약재무	 정보	
	제 18 기	제 17 기	제 16 기
항 목	2025.04.04	2024.04.04	2023.04.04
운용자산	13,771,829,686	20,519,771,465	22,900,601,132
유가증권	13,648,694,050	20,381,663,510	22,790,763,28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23,135,636	138,107,955	109,837,852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333,975,262	628,589,954	419,284,028
자산총계	14,105,804,948	21,148,361,419	23,319,885,160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211,019,756	277,708,389	15,900,174
부채총계	211,019,756	277,708,389	15,900,174
원본	15,378,428,864	21,123,407,532	26,803,761,646
수익조정금	0	0	0
이익조정금	-1,483,643,672	-252,754,502	-3,499,776,660
자본총계	13,894,785,192	20,870,653,030	23,303,984,986
운용수익	-1,387,947,548	3,371,099,609	-2,644,578,755
이자수익	3,485,682	9,825,285	17,318,346
배당수익	267,296,809	493,363,737	549,091,909
매매평가차손익	-1,665,988,021	2,858,263,140	-3,211,313,835
기타수익	7,257,982	9,647,447	324,825
운용비용	596	26,708	130,306
관련회사보수	0	0	0
매매수수료	596	26,708	130,306
기타비용	0	0	0



당기순이익	-1,387,948,144	3,371,072,901	-2,644,709,061
매매회전율	176	184	114

주1)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3)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18기 0원, 17기 0원, 16기 0원) 주4)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18기 0원, 17기 0원, 16기 0원)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 원,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매매회전율	동종 유형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주식의 평균가액 (B)	(A/B)	평균 매매회전율 ^{주 1)}
422,649	23,591,994,199	620,100	28,859,966,770	16,371,891,633	176	32.11

주1)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최근 자료를 활용합니다. (공모펀드(ETF제외), 증권펀드 기준)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 원]

자산유형별 거래비용								
구분	당해 연도			전년도				
	거래금액 (A)	거래비용주1)			거래비용주1)			
		금액 (B)	거래비용 비율 (B/A)	거래금액 (A)	금액 (B)	거래비용 비율 (B/A)		
주식	52,931,514,338	54,273,348	10.25%	96,259,225,678	97,748,845	10.16%		
주식 이외의 증권	103,920,396	103,892	10.00%	185,967,634	185,906	10.00%		
장내파생	-	-	0.00%	-	-	0.00%		
장외파생	-	-	0.00%	-	-	0.00%		
부동산	-	-	0.00%	-	-	0.00%		
기타 (레포,대차,콜 등)	800,059,259	596	0.01%	34,602,635,328	26,708	0.01%		
합 계	53,835,493,993	54,377,836	10.10%	131,047,828,640	97,961,459	7.48%		

주1)주식 중개수수료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되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거나 부동산 등과 같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수익적 지출 등 비용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기재)은 생략 가능합니다.

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단위 : 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 18 기	제17기	제16기				
8 4	2025.04.04	2024.04.04	2023.04.04				
운용자산	13,771,829,686	20,519,771,465	22,900,601,132				
현금및예치금	123,135,636	138,107,955	109,837,852				
현금및현금성자산	123,135,636	138,107,955	109,837,852				
유가증권	13,648,694,050	20,381,663,510	22,790,763,280				



지분증권	13,648,694,050	20,278,125,800	22,790,763,280
수익증권	0	103,537,710	0
기타자산	333,975,262	628,589,954	419,284,028
매도유가증권미수금	168,828,378	268,841,808	14,452,835
미수이자	24,434	23,730	41,018
미수배당금	165,122,450	359,724,416	404,790,175
자 산 총 계	14,105,804,948	21,148,361,419	23,319,885,160
기타부채	211,019,756	277,708,389	15,900,174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11,009,338	272,554,667	11,633,180
해지미지급금	10,418	5,153,722	4,256,786
수수료미지급금	0	0	10,208
부 채 총 계	211,019,756	277,708,389	15,900,174
원 본	15,378,428,864	21,123,407,532	26,803,761,646
이익잉여금	-1,483,643,672	-252,754,502	-3,499,776,660
자 본 총 계	13,894,785,192	20,870,653,030	23,303,984,986
부채 및 자본 총계	14,105,804,948	21,148,361,419	23,319,885,160
-			

주)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 손익계산서 [단위 : 원]

손익계산서								
	제 18 기	제 17 기	제 16 기					
항 목	2024.04.05 ~ 2025.04.04	2023.04.05 ~ 2024.04.04	2022.04.05 ~ 2023.04.04					
운용수익(운용손실)	-1,387,947,548	3,371,099,609	-2,644,578,755					
투자수익	270,782,491	503,189,022	566,410,255					
이자수익	3,485,682	9,825,285	17,318,346					
배당금수익	267,296,809	493,363,737	549,091,909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2,701,955,563	6,476,791,923	2,173,226,003					
지분증권매매차익	1,959,494,123	3,799,264,728	1,287,814,666					
지분증권평가차익	742,461,440	2,677,527,195	885,411,337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4,367,943,584	3,618,528,783	5,384,539,838					
지분증권매매차손	2,331,564,571	3,011,210,303	3,576,451,945					
지분증권평가차손	2,036,379,013	607,318,480	1,808,087,893					
기타운용수익	7,257,982	9,647,447	324,825					
운용비용	596	26,708	130,306					
매매수수료	596	26,708	130,306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1,387,948,144	3,371,072,901	-2,644,709,061					
좌당순이익(좌당순손실)	-79.63	108.83	-95.82					



[단위:백만좌,백만원]

주)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회계기간 중 기간초잔고 기간말 잔고 설정 구분 기간 환매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2022/04/05~ 28,447 27,174 3,834 3,450 5,477 4,675 26,804 23,304 2023/04/04 2023/04/05~ 운용펀드 26,804 23,304 16,238 14,991 21,918 20,796 21,123 20,871 2024/04/04 2024/04/05~ 21,123 20,871 633 599 6,378 6,187 15,378 13,895 2025/04/04 2022/04/05~ 6,950 6,521 1,062 873 890 745 7,122 5,973 2023/04/04 수수료선취-2023/04/05~ 573 7,122 5,973 665 1,267 6,520 6,103 1,111 오프라인(A) 2024/04/04 2024/04/05~ 6,520 6,103 400 357 1,101 1,004 5,819 4,891 2025/04/04 2022/04/05~ 944 891 263 220 160 131 1.047 888 2023/04/04 수수료선취-2023/04/05~ 780 1,047 888 158 139 385 340 820 온라인(A-E) 2024/04/04 2024/04/05~ 820 780 117 106 229 220 709 609 2025/04/04 2022/04/05~ 762 714 98 81 153 129 707 592 2023/04/04 수수료미징구-2023/04/05~ 707 592 70 60 186 166 591 551 오프라인(C) 2024/04/04 2024/04/05~ 591 551 30 27 171 155 450 377 2025/04/04 2022/04/05~ 746 700 193 161 101 82 839 703 2023/04/04 수수료미징구-2023/04/05~ 839 703 115 100 218 195 736 689 온라인(C-E) 2024/04/04 2024/04/05~ 736 689 67 59 99 92 704 592 2025/04/04 2022/04/05~ 0 52 53 0 52 46 0 0 2023/04/04 수수료미징구-2023/04/05~ 오프라인-2024/04/04 고액(C-I) 2024/04/05~ 2025/04/04 2022/04/05~ 2023/04/04 수수료미징구-2023/04/05~ 오프라인-2024/04/04 고액(C-I2) 2024/04/05~ 2025/04/04



	2022/04/05~	18,426	17,435	2,142	2,000	3,561	3,000	17,006	14,506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기관,	2023/04/04 2023/04/05~ 2024/04/04	17,006	14,506	15,597	14,070	19,766	18,327	12,837	12,326
고액(C-F)	2024/04/05~ 2025/04/04	12,837	12,326	0	0	4,659	4,376	8,178	7,112
= ! = ! =	2022/04/05~ 2023/04/04	-	-	-	-	-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C-W)	2023/04/05~ 2024/04/04	-	-	-	-	-	-	-	
<u> </u>	2024/04/05~ 2025/04/04	-	-	-	-	-	-	-	
人人 コロ지コ	2022/04/05~ 2023/04/04	30	29	6	5	19	16	18	15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C-P)	2023/04/05~ 2024/04/04	18	15	2	2	19	17	0	0
-1 12 2 (0 1)	2024/04/05~ 2025/04/04	-	-	-	-	-	-	-	
수수료미징구-	2022/04/05~ 2023/04/04	672	634	110	91	261	221	521	442
온라인- 퇴직연금(C-	2023/04/05~ 2024/04/04	521	442	38	33	271	237	289	275
Pe)	2024/04/05~ 2025/04/04	289	275	21	18	94	85	215	185
수수료미징구-	2022/04/05~ 2023/04/04	147	138	20	17	8	7	159	134
오프라인 -개인연금	2023/04/05~ 2024/04/04	159	134	11	10	65	56	105	99
(C-P2)	2024/04/05~ 2025/04/04	105	99	16	15	13	12	108	92
수수료미징구-	2022/04/05~ 2023/04/04	17	16	2	2	6	5	14	12
온라인 -개인연금	2023/04/05~ 2024/04/04	14	12	4	4	9	8	8	8
(C-P2e)	2024/04/05~ 2025/04/04	8	8	18	16	14	12	12	11
	2022/04/05~ 2023/04/04	17	16	2	1	1	0	18	15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S)	2023/04/05~ 2024/04/04	18	15	2	2	2	1	18	17
	2024/04/05~ 2025/04/04	18	17	2	1	7	7	12	10

주)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기준)

-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u>과거의 투자실적을 나타낼 뿐</u>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



	최초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이후
종류	설정일	2024/04/05 ~ 2025/04/04	2023/04/05 ~ 2025/04/04	2022/04/05 ~ 2025/04/04	2020/04/05 ~ 2025/04/04	(%)
투자신탁(운용)	2007-04-05	-8.55	1.94	-1.84	11.24	7.59
비교지수	2007-04-05	-9.37	-0.04	-3.25	7.22	2.94
수익률 변동성(%)	2007-04-05	17.65	16.07	16.13	16.90	18.79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07-04-05	-10.21	0.11	-3.60	9.25	5.68
비교지수	2007-04-05	-9.37	-0.04	-3.25	7.22	2.94
수익률 변동성(%)	2007-04-05	17.66	16.07	16.14	16.91	18.80
수수료선취-온라인(A-E)	2017-01-10	-9.71	0.67	-3.06	9.86	4.70
비교지수	2017-01-10	-9.37	-0.04	-3.25	7.22	2.34
수익률 변동성(%)	2017-01-10	17.65	16.07	16.14	16.90	16.8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2009-04-17	-10.30	0.01	-3.69	9.15	5.28
비교지수	2009-04-17	-9.37	-0.04	-3.25	7.22	3.90
수익률 변동성(%)	2009-04-17	17.66	16.07	16.14	16.91	15.99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11-06-27	-10.21	0.11	-3.60	9.25	2.23
비교지수	2011-06-27	-9.37	-0.04	-3.25	7.22	1.32
수익률 변동성(%)	2011-06-27	17.66	16.07	16.14	16.91	15.9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액(C-I)	2016-08-19	-	-	-4.54	10.95	5.31
비교지수	2016-08-19	-	-	-4.38	9.79	3.61
수익률 변동성(%)	2016-08-19	-	-	9.25	12.57	14.12



		l	L	ı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액(C-I2)	2017-12-11	-	-	-	-	-1.12
비교지수	2017-12-11	-	-	-	-	-1.20
수익률 변동성(%)	2017-12-11	-	-	-	-	7.3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기관, 고액(C-F)	2012-02-06	-9.43	0.97	-2.77	2.61	2.32
비교지수	2012-02-06	-9.37	-0.04	-3.25	0.40	1.17
수익률 변동성(%)	2012-02-06	17.65	16.07	16.14	15.96	13.7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C-W)	2021-03-04	-	-	-	0.57	0.70
비교지수	2021-03-04	-	-	-	0.80	0.98
수익률 변동성(%)	2021-03-04	_	_	_	-	1.6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C-P)	2017-06-13	-	1.85	-2.42	10.14	3.09
비교지수	2017-06-13	-	1.75	-2.10	7.99	1.18
수익률 변동성(%)	2017-06-13	_	5.10	10.29	13.91	15.33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C-Pe)	2017-12-08	-9.71	0.67	-3.06	9.86	2.08
비교지수	2017-12-08	-9.37	-0.04	-3.25	7.22	0.01
수익률 변동성(%)	2017-12-08	17.65	16.07	16.14	16.90	17.4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C-P2)	2017-11-30	-9.93	0.42	-3.30	9.58	1.62
비교지수	2017-11-30	-9.37	-0.04	-3.25	7.22	-0.06
수익률 변동성(%)	2017-11-30	17.66	16.07	16.14	16.90	17.40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C-P2e)	2017-12-13	-9.66	0.72	-3.01	9.91	2.28
비교지수	2017-12-13	-9.37	-0.04	-3.25	7.22	0.21
수익률 변동성(%)	2017-12-13	17.65	16.07	16.14	16.90	17.44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2014-04-22	-9.69	0.67	-3.06	9.86	4.50
비교지수	2014-04-22	-9.37	-0.04	-3.25	7.22	2.00
수익률 변동성(%)	2014-04-22	17.65	16.07	16.14	16.90	15.68
T T						

주1)비교지수: KOSPI*95% + CD91* 5%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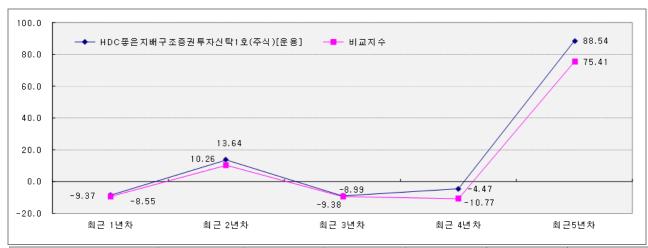
주2)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 전체(운용펀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 전체(운용펀드)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4)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 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5)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초	최근 1 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종류	설정일	2024/04/05 ~ 2025/04/04	2023/04/05 ~ 2024/04/04	2022/04/05 ~ 2023/04/04	2021/04/05 ~ 2022/04/04	2020/04/05 ~ 2021/04/04
투자신탁(운용)	2007-04-05	-8.55	13.64	-8.99	-4.47	88.54
비교지수	2007-04-05	-9.37	10.26	-9.38	-10.77	75.41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07-04-05	-10.21	11.62	-10.62	-6.18	85.25
비교지수	2007-04-05	-9.37	10.26	-9.38	-10.77	75.41
수수료선취-온라인(A-E)	2017-01-10	-9.71	12.23	-10.12	-5.66	86.25
비교지수	2017-01-10	-9.37	10.26	-9.38	-10.77	75.4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2009-04-17	-10.30	11.51	-10.70	-6.27	85.07
비교지수	2009-04-17	-9.37	10.26	-9.38	-10.77	75.41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11-06-27	-10.21	11.62	-10.62	-6.18	85.25
비교지수	2011-06-27	-9.37	10.26	-9.38	-10.77	75.4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액(C-I)	2016-08-19	-	-	-13.03	3.56	86.71
비교지수	2016-08-19	-	-	-12.58	4.07	75.4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액(C-l2)	2017-12-11	-	-	-	-	-
비교지수	2017-12-11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기관, 고액(C-F)	2012-02-06	-9.43	12.57	-9.85	-5.38	30.79
비교지수	2012-02-06	-9.37	10.26	-9.38	-10.77	26.2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C-W)	2021-03-04	-	-	-	1.72	1.17
비교지수	2021-03-04	-	-	-	3.13	0.9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C-P)	2017-06-13	-	3.73	-10.43	-5.99	85.61
비교지수	2017-06-13	-	3.54	-9.38	-10.77	75.41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C-Pe)	2017-12-08	-9.71	12.23	-10.12	-5.66	86.25
비교지수	2017-12-08	-9.37	10.26	-9.38	-10.77	75.4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C-P2)	2017-11-30	-9.93	11.95	-10.35	-5.89	85.80
비교지수	2017-11-30	-9.37	10.26	-9.38	-10.77	75.41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C-P2e)	2017-12-13	-9.66	12.29	-10.07	-5.61	86.34
비교지수	2017-12-13	-9.37	10.26	-9.38	-10.77	75.41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2014-04-22	-9.69	12.24	-10.12	-5.66	86.25
비교지수	2014-04-22	-9.37	10.26	-9.38	-10.77	75.41

주1)비교지수: KOSPI*95% + CD91*5%

주2)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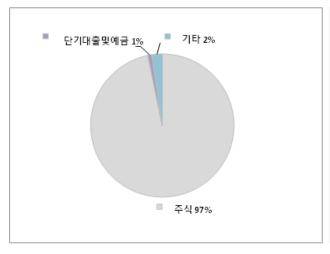
주5)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 전체(운용펀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 전체(운용펀드)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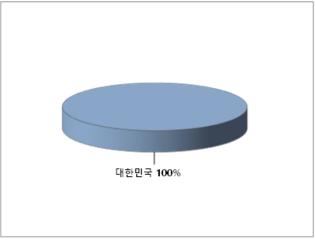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25.04.04 현재 / 단위 : 백만원, %]

		증	권		파생	상품	부	특별자산		단기		
통화별 구분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 동 산	실물 자산	기타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대한	13,649	0	0	0	0	0	0	0	0	123	334	14,106
민국	(96.7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87)	(2.37)	(100.00)
자산	13,649	0	0	0	0	0	0	0	0	123	334	14,106
합계	(96.7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87)	(2.37)	(100.00)

주)()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라. ESG투자전략 이행현황

- 이 집합투자기구의 20점 이상 거버넌스(Governance) 점수별 비중입니다.

구분	비중('25.04.04 기준)
30점 이상	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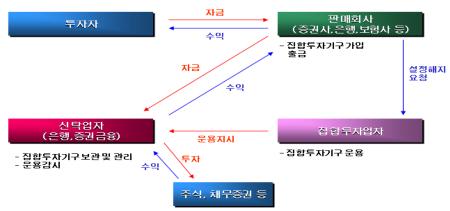
25점 이상	67.0%
20점 이상	5.8%

- 주주활동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구조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HDC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11 대영빌딩 2층(T. 3215-3000)
구도 못 한탁시	www.hdcasset.com
	2000. 3. 9. 예비허가 신청
	2000. 6. 27. 아이투자신탁운용㈜ 설립
취보여취	2000. 7. 24. 영업허가 및 수익증권 최초상품 인가 취득
회사 연혁	2000. 8. 29.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
	2009. 5. 22. 본점 사무실 이전
	2012. 1. 2. HDC자산운용㈜으로 상호 변경
자본금	자본금: 158억
주요주주현황	엠엔큐투자파트너스(유)(87.34%, 특수관계인 포함), 기타(12.66%)

나. 주요업무

(1) 주요 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 시하는 업무

(2) 의무 및 책임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위:백만원]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업무위탁

[기준가격계산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 여야 합니다.
-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 업무를 수탁 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 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익자명부 작성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업무를 수탁 받은 전자등록기관이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전 자등록기관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재	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 25 기	제 24 기		제 25 기	제 24 기	
항 목	2024.12.31.	2023.12.31.	항 목	′24.01.01 ~ ′24.12.31.	′23.01.01 ~ ′23.12.31.	
유동자산	26,620	26,945	영업수익	6,499	6,997	
고정자산	974	498	영업비용	5,352	5,422	
자산총계	27,594	27,443	영업이익	1,147	1,574	
유동부채	450	421	영업외수익	0	8	
고정부채	279	260	영업외비용	8	0	
부채총계	729	680	영업외이익	-8	8	
자본금	15,800	15,800	버이비티카저스이이	1 1 2 0	4 50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0	0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139	1,582	
이익잉여금	11,065	10,962	법인세비용	246	355	
자본총계	26,865	26,762	당기순이익	893	1,227	



라. 운용자산 규모

[2025.04.23 기준 / 단위: 억원]

	증권집합투자기구				단기	파생		특별	혼합	투자		
구분	주식	혼합 주식	혼합 채권	채권	재간접	금융	상품	부동산	ㄱᆯ 자산	자산	일임	총계
수탁고	2,934	159	554	4,331	1,520	113	500	2,315	517	8,286	1,750	22,979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신탁업자)

(1) 회사 개요

회사명	농협은행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T. 1588-2100)
회사 연혁 등	1961.6.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의 양 기구를 통합 의결 1961.8. 통합 농협조합 발족 1967.1. 농협기본법 공포 2001.10. 세계협동조합(ICA) 서울총회 개최 2007.9. 정보보호 국제표준 ISO 인증 획득 2012.3. 농협은행 출범

(2)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의무와 책임

[의무]

•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1) 투자설명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2)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3)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5)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6)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7)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책임1**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 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 개요

회 사 명	하나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02-6714-46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홈페이지(www.keb.co.kr) 내 소개 참조.

(2)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2) 의무와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관련법령 및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관련법령 및 신탁계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 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NICE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설립일	2000.05.29.	2000.06.20.	2000.06.16.	2011.06.09.
연락처	02-399-3350	02-3215-1400	02-398-3900	02-721-5300
회사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ap.com	www.bond.co.kr	www.nicepni.com	www.fnpricing.com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의무와 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마. ESG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평가회사 - 해당사항 없음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 한 수익증권의 총좌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 221 조제 6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생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 221 조제 7 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 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 전까 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4)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및 법시 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제외는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4)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6)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 7)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명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
- 8)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9)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10)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11)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 항으로 정하는 경우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5)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 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 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 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 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 ►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 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 동 규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고자하는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해소 및 관리 정책, 발생의 사전 억제 정책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해소 및 관리 정책



- 금융위원회의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정리계획을 '임의해지',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합병', '모집합투자기구 이전'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립한 정리계획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정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신규 공모 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서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정리 이행실적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금융감독원장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합니다.

▶ 발생 사전 억제 정책

- 신규 집합투자기구 등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 반영하고, 신규 판매시 판매 회사에 해당사실을 알려 투자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 신설 및 종류 수익증권 추가를 위한 경우이거나, 설정 시부터 소규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기구 설정 후 6개월간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 주금, 지분증권 대금의 잔액 등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당사의 대표 집합투자기구(투자대상자산이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당사가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된다는 사실
 - 2. 집합투자기구 설정 1년 후에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해지',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합병', '모집합투자기구 이전'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정리된다는 사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 1) 영업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2.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법 제 87 조제 8 항제 1 호·제 2 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4.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3) 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 개월 이 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 억원 이하인 경우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 억원 초과 500 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 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 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 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그 밖에 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 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 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



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법 제 247 조제 5 항 각호의 사항
-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사항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 보고 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5)의 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 80 조 제 1 항 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 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www.hdc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 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 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5) 투자설명서의 변경, 집합투자규약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투자운용인력의 변 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제 3 항 제 2 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8) 설정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9) 설정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 신탁이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법 제 87 조제 2 호 및 제 3 호에 따라 주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 월 30 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지표의 공시 -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내역 : 해당사항 없음(최근 1년간 내역)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최근 1년간 내역)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 기준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증권 및	□ 평가 항목



장내파생상품	중개거래 시장점유율, 거래관련 자격보유여부, 조직 및 인력현황, 리서치 서비스의
의 거래	질, 감독기관 제재 및 시정조치 내역, 결제안정성, 시장정보 제공능력, 매매체결의
	신속성, 거래관련 보안유지 능력, 세미나 개최 등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사를
	선정합니다.
	│ │
	평가방법을 Manager, Analyst, Trader 등 중개사와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담당자들이
	매월 1 회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하여 선정하며, 취득점수가 동일한 경우 Compliance,
	시장정보제공능력, 매매체결능력 항목순으로 상위점수를 취득한 순서에 따라 중개사
	순위를 구분 결정합니다.
	단, 준법감시팀 및 RM 제시, 부정연루 등 결격사유 발생 중개사의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투자주체	HDC자산운용 주식회사				
투자목적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 목적				
투자시기 및	투자시기	투자금액	비고		
금액	2022년 4월 15일	2,000,000,000원	- 1,000,000,000원, 2024.07.24 회수 예정		
투자기간	각 건별 투자일로부터 1년 이상 투자 예정 (고유재산의 유동성 및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결정)				
투자금 회수계획					
			^그 , 2023.03.24 환매대금 인출) 청구, 2024.07.24 환매대금 인출)		

주1)본 펀드는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2017.05.10) 적용 이전에 설정된 펀드로 의무투자 대상 펀드가 아닙니다.

주2)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① 존속기간이 효력발생일부터 1년 미만일 경우는 존속기한까지 투자
- ② 당연 해지사유 발생, 소규모 펀드로서 임의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투자자의 전액 환매로 해지 해산하는 경우
- ③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신규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 설정액이 15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되는 경우 또는 소규모 펀드 정리를 위해 모펀드를 교체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 주3)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내역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주4)상기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은 작성기준일 시점 내용이므로 당사 내부 규정 또는 당사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 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증권	펀드(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수익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이상을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해당 모펀드에 집합투자재산 대부분을 투자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판매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자총회, 집합수익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 자리를 활용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집합투자기구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집합투자기구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집합투자기구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 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
비교지수	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
레버리지효과	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금리스왑	거래상대방과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 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
ㅁ니끄럽	를 말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
성과보수	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
	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
	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
	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
CICTET MM	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특정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설립한 자산유동화회사가 발
71011011	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미리 정하여진 전환가격에 기초하여 주식으로
'' '' '' '' ''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
	합니다.